

의안번호	제708호
의결 연월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스타트업 상생펀드 출자계획 동의안

제출자	충청북도지사
제출연월일	2024년 10월 2일

충청북도 스타트업 상생 펀드 출자계획 동의안

의안 번호	708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4년 10월 2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도내 유망 창업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기업의 기술과 아이디어로 충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충북↔스타트업 상생 펀드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에 따라 도의회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출자목적
 - 유망 창업기업이 소유한 혁신기술과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인구, 환경, 문화 등 충북이 직면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도모
 - 투자뿐 아니라 사업화까지 지원하여 창업기업의 스케일업 도모
- 출자근거
 -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(기금의 투자 등)
 -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(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)
 -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(기금의 관리·운용 등), 제6조(기금의 지원대상자)
- 출자방식 :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 당해 펀드에 출자
- 기대효과
 - 충북의 잠재성과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도민의 실질적인 문제와 어려움을 스타트업의 혁신기술과 아이디어로 해결하여 도민 삶의 질 향상
 - 도내 유망기업 육성 및 창업기업 충북 유치로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도모

3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□ 출자 심의요구서

주관부서	경제기업과	소속부서장	팀 장	담당 주무관	전화
	혁신창업팀	이혜란	이나경	송혜란	220-3233

사업명	충청북도 스타트업 상생펀드 출자계획 동의안																						
출자대상	<p>○ 가칭충북↔스타트업 상생펀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업무집행조합원(운용사) : (주)블루포인트 파트너스 - 유한책임조합원 : 충청북도 - 존속기간 : 2024년 ~ 2032년 (8년, 투자 3년, 회수 5년) - 펀드규모 : 55억원 · 충청북도 50, (주)블루포인트파트너스 5 - 투자대상 : 7년 이내 창업기업 - 도 투자조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충북 지역 기업에 약정총액의 30% 이상(16.5억원) 투자 ② 지역사회 문제 해결 창업기업에 약정총액의 30%(16.5억원) 이상 투자 ③ 실증지원 사업 참여 스타트업에 약정총액의 20% 이상(11억원) 투자 ④ 3년 이내 초기기업에 약정총액의 20% 이상(11억원) ※ 모태펀드 관리 기준을 준용하되 투자 성과분석을 통해 연도별 출자금 변경, 출자금 납입 중단 등 규약 추가 																						
	출자사업비	<p>○ 출자 예정금액 : 5,000백만원(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)</p> <p>○ 출자내용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단위 : 백만원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총 계</th> <th>'24년</th> <th>'25년</th> <th>'26년</th> <th>'27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총 계</td> <td>5,000</td> <td>1,000</td> <td>2,500</td> <td>1,500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(가칭) 충북↔스타트업 상생펀드</td> <td>5,000</td> <td>1,000</td> <td>2,500</td> <td>1,500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연도별 투자금액은 펀드구성 일정 및 투자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</p>					구 분	총 계	'24년	'25년	'26년	'27년	총 계	5,000	1,000	2,500	1,500		(가칭) 충북↔스타트업 상생펀드	5,000	1,000	2,500	1,500
구 분	총 계	'24년	'25년	'26년	'27년																		
총 계	5,000	1,000	2,500	1,500																			
(가칭) 충북↔스타트업 상생펀드	5,000	1,000	2,500	1,500																			

출자 필요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인구소멸, 환경, 문화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할 아이디어·기술력을 가진 유망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펀드 투자를 통한 기술창업 지원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○ 투자 확보 및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망 창업기업 펀드 투자를 통하여 충북 창업 활성화 및 기업 생존율 제고 <p>* 창업기업 수 지속 감소 : ('20년) 40,749 개 → ('21년) 39,195 개 → ('22년) 38,234 개 창업기업 7년 생존률('21) : 전국(26.0%) > 충북(25.6%), 전국대비 0.4% 낮음(전국 10위)</p>
근거법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4항 제1호 ④ 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벤처투자조합 ○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 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2. 벤처투자조합 15. 창업기획자(엑셀러레이터)
지도감독 부서인건 (중 평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주)블루포인트파트너스는 국내 대표 창업기획자*로 공모 및 심사절차를 거쳐 선정한 운용사로 우수한 역량을 가진 민간 운용사와 전국의 유망 창업기업들의 지역 집적화로 충북 창업생태계 활성화 도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충북이 당면한 사회 난제 해결, 투자 방식 변화 등 충청도만의 전략적인 펀드 조성을 위해 엄격한 평가를 통해 운용사 선정 * 창업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엑셀러레이터 2위(스타트업 트렌드 리포트 2022) ○ 모태펀드 관리 기준을 준용하되 출자금 손실 최소화를 위한 대응 조건을 규약에 추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투자 성과분석을 통해 연도별 출자금 변경이나 상호 협의하에 출자금 납입 중단 등 ○ 창업기업을 위한 지역 내 안정적 투자재원을 기반으로 투자 → 성장 → 회수 → 재투자의 선순환 투자 생태계 구축 및 충북 창업 붐 조성을 위하여 펀드 결성 타당
첨부자료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서 2. 출자출연 사업계획서

1-① 관리·감독부서 검토결과서

1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 : 해당없음

2 출자금 요구 부서 검토 의견

-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진 창업기업 투자 및 사업화로 총북이 당면한 사회 난제(인구소멸, 환경, 문화 등) 해결하고 창업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한 총북 창업생태계 붐 조성 필요
- 결성 예정인 스타트업 상생 펀드에 대해 도 출자계획에 따라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총 50억원을 출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

3 펀드 출자금 검토

○ 가칭 총북-스타트업 상생펀드 (단위 : 억원, %)

출자자		출자액	출자비율
합 계		55	100
LP(출자자)	충청북도	50	91
GP(운용사)	(주)블루포인트파트너스(민간)	5	9

- ※ 연도별 투자금액은 펀드조성 일정 및 투자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
- ※ 운용사 출자 : 업무집행조합원(GP)은 벤처투자조합 운영을 위해 출자금 총액 1%이상 출자 의무
- ※ 근거법령 :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4조(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)
 4.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1퍼센트 이상일 것

1-② 출자 사업계획서

사업명	충청북도 스타트업 상생펀드 출자	구분	출자	50,000백만원
주관부서	경제기업과		출연	

□ 목적 및 필요성

- 유망 창업기업의 혁신기술과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환경, 문화, 지역소멸 등 충북 사회문제 해결 → 살기 좋은 충북으로 연결되는 투자 추진
- 투자 확보 및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망 창업기업 펀드 투자를 통하여 충북 창업 활성화 및 기업 생존을 제고
- 창업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하여 투자뿐 아니라 '사업화'까지 지원

□ 출자개요

- 충청북도↔스타트업 상생펀드
 - 업무집행조합원(운용사) : (주)블루포인트파트너스
 - 유한책임조합원 : 충청북도
 - 존속기간 : 2024년 ~ 2032년(8년, 3년 투자 5년 회수)
 - 펀드규모 : 55억원
 - 충청북도 50, (주)블루포인트파트너스 5
 - 투자대상 : 7년 이내 창업기업
 - 도 투자조건
 - ① 충북 지역 기업에 약정총액의 30% 이상(16.5억원) 투자
 - ② 지역사회 문제 해결 창업기업에 약정총액의 30%(16.5억원) 이상 투자
 - ③ 실증지원 사업 참여 스타트업에 약정총액의 20% 이상(11억원) 투자
 - ④ 3년 이내 초기기업에 약정총액의 20% 이상(11억원) 투자
 - ※ 모태펀드 관리 기준을 준용하되 투자 성과분석을 통해 연도별 출자금 변경이나 상호 협의하에 출자금 납입 중단 등

□ 산출기초

- 조합원 출자약정 : 55억원(충북도 50, 기타 5)
- 도 출자계획 : 50억원('24년 10억, '25년 25억, '26년 15억)
 - ※ 연도별 투자금액은 펀드조성 일정 및 투자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

【 펀드별 출자약정 내역】

(단위 : 억원)

구 분	계	도비	기타
충북↔스타트업 상생펀드	55	50	5

□ 기대효과

- 충북 지역의 잠재성과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주민들의 삶의 문제와 부족함을 스타트업의 혁신기술과 아이디어로 해결, 도민 삶의 질 향상
- 사업화 실증지원(엑셀러레이팅)을 통해 검증된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기존 펀드와 차별성 도모
- 도내 유망기업 육성 및 창업기업 충북 유치로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도모

□ 출자 미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

- 금번 조성하는 충북↔스타트업 상생펀드는 도 현안(인구소멸, 환경, 문화 등)을 해결할 아이디어·기술력을 가진 창업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펀드로, 미 승인시 펀드 결성 무산 및 향후 충북도의 펀드 결성·참여에 어려움 발생 예상
- 자금난을 겪는 도내 창업·벤처기업들의 지속적인 감소 및 창업생태계 구축 지연 등 충북 경제 활력 저하

관 련 법 령

□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

제71조(기금의 투자 등) ④ 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 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.

1. 벤처투자조합
2. 모태조합
3. 신기술사업투자조합

□ 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

제8조(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

□ 「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

제5조(기금의 관리·운용 등)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.

8.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71조제4항 각 호의 조합에 대한 출자금

제6조(기금의 지원대상자)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 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.

11.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
12. 벤처투자조합
13. 벤처투자모태조합
14. 신기술사업투자조합
15. 창업기획자(엑셀러레이터)

□ 「지방재정법」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